



# 2026년 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알리바바닷컴 참가기업 모집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세계 대표적 글로벌 B2B 플랫폼 ‘알리바바닷컴’ 입점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26. 6월

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

## 1 지원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-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」
  - 사업기간 : '26. 6월 ~ 12월 \*멤버십 적용기간은 가입 후 1년임
  - 사업내용 : 도내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형태 지원
  - 지원대상 : 알리바바닷컴 신규가입 또는 갱신을 원하는 자체 브랜드 또는 제조 상품을 보유한 경기도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 
\*일반 도/소매업, 유통업 등 제외
  - 신청 자격요건
    -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      - ▶ (본사)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/본점소재지 ▶ (공장)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
- \*사업 공고문 및 운영지침 등 관련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**

## 2 사업 신청방법

- 모집기간 : 26. 6. 18.(목) ~7. 1.(수) 17:00 限
- 신청방법 : 경기도주식회사 사이트(<https://www.kgcbrand.com/KGCBrand/>) 신청
- 제출서류 : 공고문 내 (첨부)제출 서류 목록 참조

## 3 제외대상

- 일반 도·소매업 및 단순 유통업 등 제조기반이 없는 기업
- 자체 브랜드(OEM 생산 포함) 제품 없이 타사 제품을 단순 유통·판매하는 기업
- 세금 체납 기업(완납 확인 후 선정 가능), 휴·폐업 기업
- 정부, 타 지자체, 유관기관 등의 동일사업 중복 수혜 기업

## 4 지원사업 세부 내용

○ 지원규모 : 총 25개사

구분	세부 과제	지원규모
신규기업	알리바바닷컴 가입 이력이 없거나 멤버십 만료 후 1년을 초과한 경우	25개사 내외
갱신기업	알리바바닷컴 멤버십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이거나, 멤버십 만료 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	

※신규 및 갱신기업 규모는 모집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음

※'신규' 및 '갱신' 여부는 멤버십 결제 시점 기준이며, 갱신기업은 알리바바닷컴 시스템상 '갱신'으로 분류되어야 함 (단, 공고일 이후 결제한 경우 선정 시 환급 가능)

○ 사업기간: 선정일 ~ '26. 12월 \*멤버십 적용기간은 가입 후 1년임

- 사업결과 보고 및 환급 진행을 위해 참여기업은 '26. 11월 限 실적 제출 必

○ 알리바바닷컴 연간 멤버십 패키지 비용 **일부 지원 (환급 방식)**

- 참여기업의 Alibaba.com 멤버십 패키지 비용 선 결제(USD 기준) 후,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금 환급 방식

- 총 패키지 가입액 중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(부가세 제외)

**※ 단, 다음 페이지 [4. 참여기업 의무사항] 미이행 시, 지원금 지급 불가**

○ 패키지 상세(환율: 공고일 기준, 1\$=1,520원)

구분	참여기업 선결제 비용		지원금 (추후 환급)	기업 자부담 (환율에 따라 변동)
	패키지 가입액 (USD)	패키지 가입액(KRW) (환율: 1,520원*)		
신규 기업 (스탠다드)	\$4,999	약 7,598,480원 *USD로 결제	4,000,000원 *KRW로 환급	약 3,598,480원
신규 기업 (Growall)	\$5,999	약 9,118,480원 *USD로 결제	4,000,000원 *KRW로 환급	약 5,118,480원
갱신 기업 (스탠다드)	\$4,899	약 7,446,480원 *USD로 결제	4,000,000원 *KRW로 환급	약 3,446,480원

※환율 : 2026. 6. 16. 공고 당시 기준으로, 실제 기업 결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○ 스토어 운영 지원

- 알리바바닷컴 전담 어카운트 매니저 배정

- 알리바바닷컴 기업별 1:1 컨설팅 지원

○ 알리바바닷컴 입점 교육 지원

- 플랫폼 운영 관련 온·오프라인 교육, 연 4회 예정

※ 신규 가입기업은 교육 참여 필수(참여기업 선정 후, 별도 안내)

- 알리바바닷컴 사이트 내, 경기도 기획전 홍보 지원
  - 알리바바닷컴 사이트 내에 경기도 기업들을 모아 기획전 배너 형식으로 구축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
    - ※ 알리바바닷컴 협의 결과에 따라 운영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

## 4 참여기업 의무사항

- 참여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Alibaba.com 입점(신규 및 갱신) 완료
  - 스토어 구축 (제품 1개이상 포스팅 완료) 및 알리바바닷컴 기업인증 포함
- 참여기업 선정 후 2개월 이내 알리바바닷컴 결제 시스템 TA(Trade Assurance) 기능 오픈(계좌 연동 포함)
-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(연 1회, 11월 예정) \*선정 이후 별도 안내
- (신규기업 의무사항) 알리바바닷컴 플랫폼 교육 참여(온·오프라인, 연 4회)
  - ※ 의무사항은 충족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되며, 보조금 지급 후 의무사항 미이행시 지원금 환수

## 5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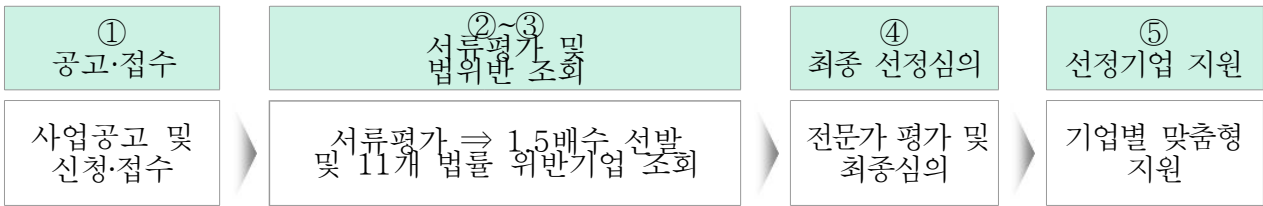
- (경기도주식회사, 알리바바닷컴) 지원사업 참여기업 최종 선정
- (지원기업) 알리바바닷컴 멤버십 결제
- (지원기업) 알리바바닷컴 스토어 구축(제품 1개 이상 포스팅) 및 TA(Trade Assurance) 기능 오픈(계좌 연동 포함)
- (지원기업 → 경기도주식회사)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- (지원기업 → 경기도주식회사) 최종 상담, 계약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(연 1회)
- (경기도주식회사 → 지원기업) 증빙서류 검토 및 보조금 정산 지급
  - ※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는 「보탬e」 시스템([www.losims.go.kr/sp](http://www.losims.go.kr/sp))으로 진행되며, 자세한 내용은 기업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
  - ※ 상황에 따라 보탬e 이용한 보조금 정산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음
- 지원 절차(최종 선정 이후)



※멤버십 적용기간은 가입후 1년임

## 6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

### ① 심사 진행 절차



### ② 심사 절차 및 내용

- 서류(요건) 검토
  - 검토대상 : 사업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기업
  - 검토내용 : 신청기업의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검토  
\*반드시 사업 접수 기간 내 필수서류 제출 요망
- 1차 서류 평가
  - 평가대상 : 서류 검토 과정을 통과하여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
  - 평가방식 :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필수 서류 일체를 토대로 서면 평가 진행
  - 선정규모 : 서류 구비 등에 따른 합격/불합격(Pass/Fail) 판정 \*접수 규모에 따라 변동
- 2차 최종 심사·평가 위원회
  - 심의대상 :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
  - 선정규모 : 최대 25개사 선정
  - 위원구성 : 외부 전문가 3명 내외
  - 평가내용 : 계획 적정성, 기업역량, 사업성, 기대효과 등 정성평가
  - 평가방식 : 사업 참가신청서 및 제품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종합 평가

평가항목	세부기준	배점
지원 필요성	· 판로지원의 필요성, 시급성 및 사업참여 의지	10점
제품 경쟁력	· 기업 제품의 시장 경쟁력 여부 · 평균적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 · 경쟁제품 대비 기술, 성능, 디자인, 가격 비교 우위 여부 ·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·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	30점
기업 역량	·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·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	10점
기대 효과	·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, 매출 증대 가능성 · 지원을 통한 기업인증, 지식재산권, 투자유치 가능성	10점
판매 적합도	· 해외 판매 경험, 영문 등 외국어 소개서 보유 여부 · 제품의 글로벌 문화적 부합성, 해외 인증 보유 여부	40점
평가 총점	· 법 위반 사실 확인시 총점의 20% 감점 적용	100점
가산점	· 착한 기업 선정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 · 주 4.5일 인센티브 시행기업, 납품 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· 가족 친화 기업, 경기임팩트유니콘기업, 산재없는 기업	각 2점 / 최대 4점
접수 합계		104점

## ○ 법 위반 사실 조회

- 시행 근거 :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
- 실시 방법 : 제출서류 검토 및 고시명단 조회, 관련 부처 협조 요청 등
- 조회 내용 : 사업공고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 관련 법률 위반 사실 조회
- 적용 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등 관련 조례에 제시된 11개 법률의 과징금,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력 확인
- 결과 활용 : 최종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선정 심의에 반영. 법 위반 사실 확인 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- \* 단,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(별첨2)에 대해서는, 「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」(서식1-3)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% 감점 미적용(‘26년 신설 항목)
- \*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

※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 건은 최종 확정판결 확인 시 제한 기준 적용

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(2025.1.17.) 및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률 분야 조사 및 심의 진행(경기도고시 제2025-23호)

-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-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-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-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
##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# 1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6. 6. 18.(목) ~ 2026. 7. 1.(수) 17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

① [사업신청]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([www.kgcbbrand.com](http://www.kgcbbrand.com))접속

→ 알림소식 → 사업공고 → ‘2026년 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알리바바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하기 →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동의, 법위반 사실 관련 동의 → 신청 정보 입력 및 필수 서류 (①신청서 ②기업소개서 등)업로드 → 신청상품 등록 → 접수완료

※ 대표자 외 담당자 연락처 기입시 반드시 연락 받을 수 있는 번호로 기재

## ② 제출서류

- 대표자의 직인(또는 서명)이 필요한 제출서류에 직인(또는 서명)이 누락 되었을 시 해당 서류는 불인정 됨
- **필수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**, 선택 제출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점수(기술역량 및 가점) 미부여
-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되며,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최근 3년 내 발급분을 인정
- 지원 신청서 및 신청기업 소개서의 경우,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일괄 스캔 및 하나의 파일(PDF) 또는 압축파일(Zip)로 통합하여 [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]란에 업로드

구분	제출 서류	발급처
필수 서류	① 사업계획서	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내 첨부파일 확인
	② 제품소개서	
	③ 서약서	
	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,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→ 인정 유효기간 내 증명서로 제출	국세청 홈택스/정부24 www.hometax.go.kr www.gov.kr
	⑤ 사업지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(경기도 소재 여부 확인) → 제출 시 발급일자는 공고기간 내 문서로 제출	한국산업단지공단 www.factoryon.go.kr
	⑥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전본) - 2025년도 재무제표 1부 <b>※초창업기업 등 발급 불가할 경우, 임의의 양식으로 사유서 제출</b>	국세청홈택스 www.hometax.go.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.4insure.or.kr
	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매출과세표준 부분 확인) - 20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<b>※초창업기업 등 발급 불가할 경우, 임의의 양식으로 사유서 제출</b>	
기타 서류 (제출 시 평가에 반영)	· 영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(링크 포함 캡처) · 외국어 카탈로그 · 외국어 홍보영상 · 해외 규격, 특허 증빙서류	-
	·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· 주 4.5일제 추진 기업 · 착한기업 · 가족친화기업 · 경기임팩트유니콘기업 ·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· 산재없는 기업*	각 발급처 *산재없는 기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근 3개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제출

### ③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
- 사업 신청은 온라인(www.kgcbrand.com) 신청 및 접수만 가능. 별도 이메일 통한 제출 불인정
- 신청 마감 시점에는 접속자 수가 많아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음. 신청에 여유가 있도록 마감 종료일 이전에 최종 접수 완료 요망.
- 온라인 신청 중 접수 마감 종료시간에 따른 차단 등으로 인해 최종 신청(접수) 미완료의 경우 신청자(신청기업) 책임임
- 대행사(외주용역사) 또는 기타 외부 전문업체의 서류 대리 작성·신청은 불가하며, 신청기업이 지원 요건 등 직접 확인 없이 단순히 대행사(외주용역사) 또는 기타 외부 전문업체의 추천 등으로 사업을 접수했을 시 이에 따른 정보 오기입 및 지원 제외 대상자 여부, 제출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(신청기업) 책임임
-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 파일 업로드 요망
  - 단, 부득이 여러 개의 PDF 파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, 하나의 압축파일(Zip)로 통합하여 업로드 요망
-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, 증빙 불가,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

## 5 신청 제외, 선정·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

- 신청 제외 대상
  - 유흥·향락업,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
  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  -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
  -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과 동일한 과제를 이미 신청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
  -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
- 지원결정 취소
  - 주관기관장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, 추후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- 사업장 휴·폐업, 경기도 외 이전, 여성기업 자격 상실 등 신청 및 지원 자격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
- 지원 결정 후 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하여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
- 허위로 과제를 추진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- 승인된 동일 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을 경우
- 추진기간 중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기타 정상적인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-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
  -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의 과제추진 중도포기, 과제 중단, 제출한 서류의 허위 판명, 타 기관 중복수혜, 완료점검 결과 지원 불인정 등으로 지원결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와 지원금 환수에 대해 결정한다.
  -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, 과제 중단/미완료 등으로 지원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지원결정 취소 외에 다른 제재 사항은 없다.
  - 단, 허위서류 제출, 타 기관 중복수혜 등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재한다.
   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  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)
    -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
  - 그 외 본 사업운영지침 사항 적용함

## 6 사업 참여 유의사항

### ① 「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준수

- 조례 제6조에 따라, 법위반 사실 확인시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 -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    - 가. (공정) ❶ 공정거래법, ❷ 하도급법, ❸ 표시광고법
    - 나. (노동) ❹ 근로기준법, ❺ 산업안전보건법
    - 다. (환경) ❻ 폐기물관리법, ❼ 대기환경보전법, ❽ 소음진동관리법, ❾ 물환경보전법
    - 라. (납세) ❿ 국세기본법, ⓫ 지방세기본법
  - 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    - 가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
나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

③ 사업참여 제한조건(변경) :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  
(기존)

가.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나.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(사업별)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(변경)

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[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]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나.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(서식4) 제출 시 평가 총점의 20% 감점 미적용

- 단,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,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다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
④ 법위반사실 확인(변경)

(기존)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

(변경)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

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법위반조회발급/법위반사실조회)

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

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
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

⑤ 이의 및 구제신청(변경) :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 
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(서식4) 제출

(기존)

가. 사업자선정위원회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 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
나.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

(변경)

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 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(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)

나. 삭제

⑥ '26년 신설 및 변경 항목

구 분	2025년	2026년	비 고
위반사실 적용법률	-	○ [신설]위반사실 적용 11개 법률 중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건부 적용 유예	경기도 고시 제 2026-8 호 (2026.1.8.)
사업참여 제한조건	-	○ [신설]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「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」 제출시 평가 총점 의 20% 감점 미적용  ○ [신설] 유예대상 47개 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	
사실확인	○ [현행] 사업부서에서 선정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전 처분기관에 법위반사실 확인(선 정기업 수의 120~150% 범위 조 회)	○ [변경] 사업부서에서 선정 예정)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전 처분기관에 법위반사실 확인(선 정기업 수의 120~150% 범위 조회) - <u>처분기관 의뢰시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을 첨부하여, 처분기관에서 유예대상 법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회신할 수 있도록 해야함</u>	

⑦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(홈페이지 신청 시 동의 절차)

## ② 공정한 [ 공모 - 심사 - 선정 ] 추진

○ 공개모집 및 외부심사위원 심사(평가)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

## ③ 가점 제도 운영

○ 평가표 가산점 항목 참조

## ④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경기도 사무위탁조례」, 「경기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」,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,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추진

## ☎ 제출 및 문의처

☞사업 주관부서 : 유통사업실

☞관련 문의 : 과장 이성현 (Tel. 031-5171-5331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주임 임채윤 (Tel. 031-5171-5332)

※ 문의 전화가 많아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 [sunghyun0624@kgcbrand.com](mailto:sunghyun0624@kgcbrand.com)  
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붙임 1. 사업공고문 1부  
      2. 사업신청서식 1부

## 별첨1

#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 목록

구분	법령	법위반 행위
1	공정거래법	•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
2	공정거래법	•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
3	표시광고법	•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
4	근로기준법	• 노동위,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
5	근로기준법	•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(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)
6	근로기준법	•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(미발급)
7	근로기준법	•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(미작성)
8	근로기준법	•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(계약서류 미보존)
9	근로기준법	•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(대장, 명세서 미작성)
10	근로기준법	•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(미비치)
11	근로기준법	•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(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)
12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안전지도사 등록, 등록갱신 미이행
13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
14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
15	산업안전보건법	•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
16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(근로자대표 참여 배제)
17	산업안전보건법	•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
18	산업안전보건법	•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
19	산업안전보건법	• 휴게시설 미설치
20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
21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
22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(책임자 미지정)
23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(미작성)
24	산업안전보건법	• 안전보건교육 미실시

구분	법령	법위반 행위
25	산업안전보건법	•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
26	산업안전보건법	• 불성실 보고
27	폐기물관리법	•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
28	폐기물관리법	•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
29	폐기물관리법	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·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
30	폐기물관리법	• 폐기물의 인계·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
31	폐기물관리법	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
32	폐기물관리법	•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
33	폐기물관리법	•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
34	폐기물관리법	•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
35	소음진동관리법	•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
36	소음진동관리법	•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
37	소음진동관리법	• 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
38	소음진동관리법	•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
39	소음진동관리법	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
40	물환경보전법	•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
41	물환경보전법	•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
42	물환경보전법	•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
43	물환경보전법	•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
44	물환경보전법	•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
45	물환경보전법	• 폐수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
46	물환경보전법	•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
47	지방세기본법	•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